

공 시 송 달 공 고

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를 2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제목: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
2. 법적근거: 국유재산법 제72조, 동법 시행령 제71조, 동법 시행규칙 제49조
3. 공고대상자 및 내역

점유자	점유지	점유면적	연간사용료	부과기간	변상금 예정금액
모*아 (행*한 가계)	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80	61.07㎡	43,823,460원	2020. 1. 1.~ 2020. 12. 31.(1년)	52,588,150원

※ 산출 서식: 연간사용료×부과기간/365×120%

4. 공고기간: 2021. 7. 22. ~ 2021. 8. 5.
5. 의견제출 기간: 2021. 8. 5. 까지

※ 기한 내 별도 의견이 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보아 변상금 부과·고지할 예정이며,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

6. 의견제출 내용

- 가.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(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)
- 나.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(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)
- 다. 변상금 분할 납부신청서(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)
- 라. 변상금 인하신청서(소상공인 확인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 포함 제출)

7. 기타문의 안내: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

(서울시 종로구 종로 6, 9층, 전화 02)6967-9223, 팩스 0505-005-1101)

2021년 7월 22일

서 울 지 방 우 정 청 장